

국 민 안 전 처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허공법 선정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관 련 자 경상남도 ○○과(전 ○○○○과) 지방○○사무관 ○○○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4. 8. 17.부터 2015. 1. 11.까지 경상남도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상남도 ○○○○○과에서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표 1]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정상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도급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2015.3.23.~ 2018.3.24.	5,916	2,958	2,958	- 축제공 L=2540m - 호안공 전석 9,447㎡	(주)○○○ ○○○	

* 자료 : 경상남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

1. 계약부서의 계약 심사 등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르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요령’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교량 시공과정에서 특허공법을 선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과정 및 사전에 계약부서에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공법의 필요성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2. 동일 지 구내 같은 조건임에도 다른 공법선정으로 예산낭비

경상남도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5개 교량을 특허공법으로 시공하면서 [표 2]와 같이 동일지구 내 시공 여건이 비슷한 조건임에도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지질검사 등의 구체적 근거 자료 제시 없이 5개 교량을 각각 서로 다른 특허 공법을 선정 시행함에 따라

교량별 최고·최저 사업비 대비 3.7배 차이가 나게 시공하였고, 그 결과 최저가 시공된 교량(○○9교) 사업비 대비 약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표 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허공법 교량별 사업비 비교

구분	○○○교	○○○교	○○○○교	○○○교	○○9교	비고
교량 규모	L=22.20m B= 5.00m	L=20.80m B= 5.00m	L=15.45m B= 5.00m	L=15.00m B= 5.00m	L=15.00m B= 5.00m	
공법	WPC거더교	PSSC합성 형 라멘교	SPC합성형 라멘교	SPC합성형 라멘교	PSSC합성형 라멘교	
사업비 (천원)	55,041	24,027	60,102	53,872	21,743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사업 추진 시 공법선정 비교 검토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